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

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 중 "증선위의"를 "증선위 또는 감독원장의"로 한다.

별표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

(단위: 천원)

구분	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	포상금 기준금액
1등급	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	1,000,000
2등급	고의Ⅲ∼V단계 조치 (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)	500,000
3등급	중과실 I ~ V 단계 조치 (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)	300,000
4등급	과실 I ∼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(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)	30,000

- ※1. 해당 사업연도말(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말로서,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사업연도말을 말한다.) 자산총액(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)을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상기 금액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한다.
- ※2.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는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[별표1] 「심사·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」에 따른 조치(최종조치를 말함)를 말하며, 회사

또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비교하여 더 높은 단계의 조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한다.

- ※3. 3등급 이하 등급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.
- ※4. 회사 또는 감사인의 내부자료나 새로운 자료가 아닌 이미 공시된 자료의 단순 비교·분석 등을 기초로 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하등급 기준금액의 1/5배를 기준금액으로 한다.

3. 기여도 :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비율로 함

항 목		· 가중치(%)		
99 47	100-80	70-40	30-0	718/1(%)
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(상장·비상장 여부)	주권상장법인	대형비상장 주식회사 (외부감사법 제2조제5호 등*) *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금융기만도 포함	비상장주식회사	40
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	대부분	일부	극히 일부	30
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 및 중요성	우수	양호	미흡	30

 ※ 회사 및 감사인 등이 자료제출 등의 요구・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(보존의무 위반, 미제출 포함)・방해・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 하여 자료 제출요구 불응 등으로 조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표에 불구하고 기여도를 50%로 한다.

별지 2 붙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기여도(B)

□ 기여도 산정 요약

	기	겨율	가중치(%)	기여도(%)
항 목	평가	점수(%) (①)	(2)	(=①×②)
a.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(상장·비상장 여부)			40	
b.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			30	
c.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 및 중요성			30	
기여도 합기	削(%)			

항목벽	평가사유	,
\circ \neg \rightleftharpoons	- 67 T T H	ı

- a.
- b.
- c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융감독원장 조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의 심의·의결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연 앵	개 성 안
제8조(포상결정) ① 증선위는 금	제8조(포상결정) ①
융위원회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	
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	
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<u>증선</u>	<u>증</u> 선
<u>위의</u> 조치가 확정된 날(이의신	위 또는 감독원장의
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)	
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	
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	
등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	
[별표] 포상금 산정기준	[별표] 포상금 산정기준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9 부저해의이 주오드변 포사근	9

<u>(단위 : 만원)</u>

<u>(단위 : 천원)</u>

구분	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	포상금 기준금액
<u>1등급</u>	고의 I 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20억원 이상 부과	<u>50,000</u>
2등급	고의 I 단계 이상의 조치로서 과징금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부과	<u>30,000</u>
3등급	고의 I 단계 이상의 조치	20,000
4등급	고의Ⅱ단계 또는 중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	15,000
5등급	고의Ⅲ단계 또는 중과실Ⅰ단계 조치	10,000

기준금액

구분	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	포상금 기준금액
<u>1등급</u>	고의 Ⅱ단계 이상의 조치	1,000,000
2등급	고의Ⅲ~V단계 조치 (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)	500,000
<u>3등급</u>	중과실 I ~ V 단계 조치 (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)	300,000
4등급	<u>과실 I ∼Ⅲ단계 조치 또는</u> <u>경고 또는 주의</u> (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)	<u>30,000</u>

<u>6등급</u>	고의Ⅳ단계 또는 중과실Ⅱ단계 또는 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	7,000
<u> 7등급</u>	고의Ⅴ단계 또는 중과실Ⅲ단계 또는 과실Ⅰ단계 조치	5,000
8등급	고의 감경시 최소 또는 중과실Ⅳ단계 또는 <u>과실Ⅱ단계 조치</u>	3,000
9등급	중과실∨단계 또는 과실Ⅲ단계 조치	2,000
<u>10</u> 등급	경고 또는 주의	1,000

※1.·※2. (생 략)

※3. 4등급 이하 등급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과 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조 정할 수 있다.

※4. (생략)

3. 기여도 :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비율로 함

2) H		기여율(%)			기중치
	항 목		70-40	30-0	(%)
신고 내용 의 구체	신고내용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적시하고 있는가?	<u>우수</u>	<u>ঔ ই</u>	<u>미흡</u>	<u>10</u>
성 및 정확 성	신고내용이 조사결과와 <u>어느 정도</u> 부합되는가?	대부분	<u>일부</u>	<u> 극히</u> <u>일부</u>	<u>20</u>
<u>증거</u> 의 충분 성 및 중요	조사의 단서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는가?	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·양 호	일부 정보확인 · 보완후 조사착수가 능할 정도로 양호	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조사에 착수하기 미흡	<u>10</u>
설	제출한 증거자료는 중요한 증거인가?	<u>결정적</u> 증거	<u>중요</u> 증거	<u>비중요</u> <u>증거</u>	<u>20</u>
	조사과정에서 협조적이었는가?	<u>매우</u> 협조적	<u>협조적</u>	비협조적	<u>10</u>
<u>기타</u>	신고자와_ 부정행위자와의 관계는?	내부자 (신고 이후 퇴직자 <u>포함)</u>	거래금융기관 또는 매입·매출 등 거래 관계에 있는 자 및 내부자 중 신고 전 퇴직자	<u>기타</u>	<u>10</u>
	<u>주가 등</u> 시장 및	<u>중대</u>	<u>보통</u>	<u>경미</u>	<u>10</u>

※ 1.	· ※2. (현행과 같음)
※ 3.	3등급
※ 4.	(현행과 같음)
3.	

-l 17	기여율(%)			가중치
항 목	100-80	70-40	30-0	(%)
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(상장·비상장 여부)	<u>주권</u> <u>상장</u> 법인	대형 비상장주 의사 (외부	<u>비상장</u> 주식 회사	<u>40</u>
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	<u>대부분</u>	<u>일부</u>	<u>극히</u> 일부	<u>30</u>
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 및	<u>우수</u>	<u> </u>	미흡	<u>30</u>

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은?				
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사업연도 (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조치수준이 가장 높은 사업연도)의 종료일로부터 얼마나 정과하였는가?	6월 이내	3년 미만	3년 이상	<u>10</u>

※ (생략)

시(제외)안

(별지2호 서식) (생 략) (붙임) 포상금 산정내역

- 1. · 2. (생략)
- 3. 기여도(B)
- □ 기여도 산정 요약

		기	겨율	가중	기여
	항 목	평 가	점수 (%) (①)	치	5 (%) (=①× ②)
신고 <u>내용</u> 의 구체	a. 신고내용이 사실 관계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명료하게 적시하고 있는가?			<u>10</u>	
성 및 충분 성	b. 신고내용이 조사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가?			<u>20</u>	
증거 의 충분	c. 조사의 단서로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는가?			<u>10</u>	
성 및 중의 성	d. 제출한 증거자료는 중요한 증거인가?			<u>20</u>	

중요성

※ (현행과 같음)

[별지 2]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실 [별지 2]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실 시(제외)안

> (별지2호 서식) (현행과 같음) (붙임) 포상금 산정내역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

		_						_	—

	기	겨율	가중	기여			
항 목	평 가	점수 (%) (①)	치 (%)	도 (%) (=①× ②)			
a.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(상장·비상장 여부)			40				
<u>b.</u>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			<u>30</u>				
c.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 및 중요성			<u>30</u>				
기여도 합계(%)							

	e. 조사과정에서 협	10	
	조적이었는가? f. 신고자와 부정		-
	행위자와의 관계	10	
	는?		
	g. 주가 등 시장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	10	
	는 영향은?	10	
기타			
	재하였던 사업연		
	도(부정행위가 장		
	<u>기간에 걸쳐 발생</u> 한 경우에는 조치	10	
	수준이 가장 높은		
	사업연도)의 종료		
	일로부터 얼마나		
	경과하였는가?		
	기여도 합계(%)		
	항목별 평가사유		
a.			a.
b.			b.
c.			c.
<u>d.</u>			(현행 d~h 삭제)
<u>e.</u>			
<u>f.</u>			
g.	<u>.</u>		
<u>h.</u>			